

스토킹 범죄의 현황과 대책

이 상 철 *
김 평 수 **

◇ 목 차 ◇

- I. 序 論
- II. 스톱킹 犯罪의 概念과 特性
 - 1. 스톱킹 犯罪의 概念
 - 2. 스톱킹 犯罪者의 類型과 特性
- III. 스톱킹 犯罪의 警護的 對應方案
 - 1. 社會的 對應方案
 - 2. 法的 對應方案
 - 3. 警護的 對應方案
- IV. 結 論
- 참고문헌
- ABSTRACT

I. 序 論

급속도로 성장하며 다변화되는 현대사회는, 사회·정치·문화·경제 등의 모든 면에서의 환경변화로 인한 법이나 도덕·윤리적 개념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형태의 신종범죄가 생겨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현대의 도시화·정보화 등의 발달로 인한 인간의 보다 나은 삶과 풍족한 정보는, 반면에 사회적으로 신종범죄와의 상관관계를 이루며 함께 발전되어 왔다.

그 대표적인 요인으로서 정보화 시대의 산물인 전화, 팩스, 카메라, 도청기 그리고 인터넷과 전자통신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기기의 발달은 인간에게 익명성과 함께 사생

*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교수, 이학박사.

** 성화대학 비서경호학과 강사.

활에 대한 감사와 프라이버시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신종범죄가 바로 스토킹범죄인 것이다.

스토킹의 기원에 대해서는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는 알 수 없다. 미루어 짐작해 봐서 어쩌면 인류가 세상에 존재하면서부터 아마도 스토킹행위와 비슷한 행위가 이미 존재하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이성간의 애정행각으로 받아들여졌고, 구체적인 범죄성으로 규정되어진 것은 도시화의 진전으로 인한 최근의 일이라 할 수 있다. 처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것은, 1980년대 초기 미국의 존 레논 살해사건 발생이후 처음으로 스토킹문제가 사회적 관심으로 대두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가수 김창완이 극성팬 신모씨(31세, 무직)를 처벌해 달라고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신모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을 위반으로 구속한 사례가 그 대표적인 사건이라 하겠다.¹⁾ 또한, 이와 비슷한 피해경험이 있는 연예인으로는 탤런트 도지원, 김지수, 최진실, 정선경, 김혜수씨 등이 있으며, 아울러 기관의 공식적인 피해현황을 현실화 한 것은 1998년 1월부터 1999년 1월까지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스토킹이란 명목으로 접수·상담한 바 있다.²⁾ 그 이후 매스컴에서는 스토킹 피해의 심각성이 보도되기 시작하였으며 일반인에게도 널리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미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스토킹방지법이 제정되었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법·제도적 장치가 없는 실정이며 학계에서도 이에 관한 연구가 아직까지 큰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한편,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가 날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이르고 있다.³⁾ 스토킹범죄는 더 이상 연예인이나 유명인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사회 일반적인 현상에 놓이게 된 것이다. 아울러 스토킹의 피해가 신문이나 잡지 등 매스미디어에 자주 등장하면서 일반인들의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이에 학계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은 스토킹의 개념을 재인식하고, 가해자인 스토키와 그 피해자의 특징을 고찰함으로써 스토킹행위에 대한 이해의 폭과 사회적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 인식하는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학계에서의 문헌⁴⁾ 및 자료를 근거로 일반인들에게도 이러한 범죄행위를

1) 경찰대학, 스토킹(새롭게 인식되는 범죄행위), 청람 제16호, 대한문화사, 2000년 7월, pp. 106-107.

2) 조중신, 시민과 변호사, 성폭력 상담에 나타난 스토킹, 1999년 5월, pp. 44-45.

3) 1998년 1월부터 1999년 1월까지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스토킹 관련 상담전화의 집계결과에 의하면, 총 95건의 상담전화중 남성피해자는 3명(3.2%)인데 비해 여성피해자는 92명(96.8%)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대상자가 상담전화를 걸어온 사람에 국한되어 있어 소수이지만 그 피해결과는 결코 간과할 수 없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스토킹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II-3의 스토키와 피해자의 유형에서 자세한 내용을 다루기로 한다.

4) 국내의 선행논문으로는 이창한, "스토킹범죄의 실태와 그 대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1998, 박철현 외 2인, 스토킹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

사전에 제거 및 방지할 수 있는 마인드를 고취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스토킹 피해를 겪고 있는 사람이나 또는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사람 모두에게 법적인 측면과 일반적인 대책 측면, 그리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호신대책과 경호적 대응방안 및 행정체계 지원방안에 대해 나열함으로써 보다 근본적으로 신변 안전대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토킹범죄의 원인과 특징 및 유형을 고찰함으로써 스토킹범죄의 이론적 체계를 확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둘째, 미국과 일본 및 한국의 스토킹범죄에 대한 실태와 입법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에 있어서 스토킹범죄의 입법방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셋째, 스토킹범죄의 안전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스토킹범죄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대상자들에게 신변안전을 위한 방안을 제공하고자 한다

Ⅱ. 스토킹 犯罪의 概念과 特性

1. 스토킹 犯罪의 概念

스토킹이란 상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상대에게 지나친 인권침해행위를 하는 일종의 범죄행위로서 정보를 탐색하고 정신적, 물리적으로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하여 상대를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공포심을 주는 도시형 신종범죄라고 할 수 있다. 다시말해서 스토킹범죄는 프라이버시 침해행위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정신건강연구소 이시형소장은 스토킹범죄에 대해서 상대가 싫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좋다면서 따라다니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다. 즉, “일방적으로 상대에게 좋은 감정을 갖고 상대도 나를 좋아 할 것이다 라는 것과 혹은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환상을 갖고 이성이나 또는 동성에 접근해서 싫은 행위나 피해를 입히거나 또는 신체적·정신적 폭행을 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와는 관계없는 일방적이라는 사실이고, 그로 인해 상대가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피해를 입게 된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들의 짝사랑과는 다르다. 짝사랑은 끝내 말을 못해 애달픈 사랑으로 끝나 버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계기로 행복한 만남이 되는 수도 물론 있다. 그러나 짝사랑은 결코 상대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구별이 애매한 경우도 있다. 그것은 강간이나, 화간이나, 혹은 성희롱이나 의례적인 접촉이나 하는 시비와도 같아서 스토킹도 행위 자체보다 상대(피해자)가 이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관점이 중요하다. 싫다는데도 계속 쫓아와서 어떤 형태로든 피해를 입힌다면 스토킹에 해당된다.

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12, 이시형, “현대사회와 스토킹”, 강북삼성병원 삼성연구소 사회정신건강연구소, 1998, 12. 등이 있다.

스토킹 행위의 개념규정에 있어서 각자마다 제각기 생각이 다를 수 있다. 한 이성에게 지속적으로 강한 구애를 한 행위가 용납되는 것과 용납되지 못한 것 사이에 분명 보이지 않는 잣대는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스토커가 폭력으로 진행될 때 피해자와의 법원과 경찰 그리고 가해자를 어느 부분의 잣대에 맞추는가에 이 신중범죄의 문제의 핵심이 있다. 최근 매스미디어나 베스트셀러에서 인기 상한가를 달리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성간의 구애를 주제로 담고 있는 내용이다. 이처럼 대중문화속에서 이성간의 자연스러운 행위가 하나의 미덕이었으나 이제는 인권유린이라는 차원으로서 시대적 산물을 남게 되는 계기를 맞았다.

「스토크」에 적절한 우리말이 없는 것도 상반되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말로는 '망연(妄戀)'으로 부를 수도 있을 것 같다. '망상적인 연애 감정을 갖고 따라 다니는 행위'라는 뜻인데 적절한 용어인지 담론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스토크(stalk)를 하는 행위를 스토킹(stalking) 그리고 스토크하는 사람(가해자)을 스토커(stalker)로 통칭되고 있다.⁵⁾⁶⁾ 스토킹은 1990년대 들어 미국을 비롯해서 가까운 일본에서도 새로운 사회 문제로 등장하여 스토킹법제정 등 대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에서는 스토킹 정의를 “계획적으로, 악의로, 타인에 대해 반복적으로 추근대거나 괴롭힘을 주는 행위(willful, malicious, and repeated following and harassing of another person)” 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⁷⁾

또한, 일본의 후쿠시마(福鳥)는, “스토커 자신이 점찍은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병적으로 집착해 따라다닌 끝에 최악의 경우에는 살인까지 이르는 망상범죄의 일종”으로 설명하고 있다.⁸⁾ 한편, 국내의 스토킹과 관련한 학자로서, 강북삼성병원 이시형 박사는, “일방적으로 상대에게 좋은 감정과 상대도 나를 좋아할 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이성에게 접근해서 상대가 싫어하는 행위를 고의로, 계획적으로 함으로써 심각한 피해를 입히거나 신체적으로 폭행하는 행위” 라고 말하고 있다.⁹⁾

위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어떤 행위를 스토킹이라고 정의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충족 시켜야 한다.¹⁰⁾

5) 스토크(stalk)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① 당당하게 걷는다. ② 살금살금 따라가다. 둘은 전혀 상반되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대개는 좋아하는 상대를 먼발치서 살금살금 따라 다니는 유형이 많다. 마치 사냥꾼이 포획물을 쫓아 숲속을 기어가는 모습이다. 그러나 스토킹 유형에 따라서는 아주 당당하게 접근하는 경우도 많다.

6) 福鳥章, 스토카의 心理學(東京:PHP新書), 1997, pp. 20-24

7) Meloy J. Reid, The Psychology of Stalking(San Diego, California: Academic Press, 1998), pp. 2-3.

8) 福鳥章, 스토카의 心理學(東京:PHP新書), 1997, p. 20

9) 이시형, “현대사회와 스토킹”, 강북삼성병원 삼성연구소 사회정신건강연구소, 1998, 12 p.1

10) 이창한, “스토킹범죄의 실태와 그 대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8, p. 9.

첫째, 어떤 특정인물에 대해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자신이나 그 가족의 생명, 신체의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느껴질 만한 일련의 행위가 의도적으로 계속되어야 한다.

둘째, 가해자도 자신의 행위가 특정인물이나 그 가족의 생명, 신체의 안전면에서 위협을 가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당연히 알고 있을만한 것이어야 한다.

셋째, 가해자의 행위가 특정인물이나 그 가족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 즉 통상인이라면 누구나 공포를 느낄만한 일련의 행위를 알면서도 하고, 또 실제로 위협한 행위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스토킹이란 것은 일정기간동안 이성이나 동성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으로서 고의로, 의도적인 계획으로, 반복적으로서 특정인이나 그 가족들에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피해를 입히며 정상적인 생활에 방해를 주는 일종의 진행(Process)형태의 병적인 행동을 말한다.

2. 스토킹 犯罪者의 類型과 특성

1) 犯罪者와 被害者의 類型

(1) 犯罪者의 類型

스토커를 직접 면담하기란 현재 여건상 매우 쉽지 않다. 사회정신건강연구소 이시형 박사가 정신과 임상에서 경험한 가해자 및 피해자와의 면담, 그리고 각 상담소, 경찰 및 설문조사한 것을 토대로 인용하고 개략적인 배경을 살펴본다.¹¹⁾ 그러면, 스토커는 어떤 사람인가를 파악해 보고 그 유형을 크게 일반적인 사람과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나누어 기술해 본다.

① 一般的 스토커(general stalking)

보통 평범한 사람들과 쉽게 구별이 되지 않지만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다.¹²⁾ 옷차림과 스타일이 깨끗하며 자존심이 세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형이라 상대방의 의견을 잘 이해하려 들지 않는 타입이다. 주된 수법으로는 편지나 FAX, E-mail, 전화 등을 사용하는 게 특징이다. 계속 사랑의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본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인을 위함이다. 또한 이들의 사고는 어린애 같은 흑백논리를 들 수 있다. 즉, 내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극단적인 사고를 갖기도 하며 화를 내면 잘 참지 못하는 성격이다. 특이한 것은, 표적에 관련된 여러 가지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도 한다.

② 精神疾患 스토커(mental disorder stalking)

11) 이시형 외, 「현대 사회와 스토킹」, 연구서 앞의 글 재인용.

12) 이웅표, 「스토커 이야기」, 명지사, 1999. 5. 30. 참조.

스토커의 유형은 평범한 보통 일반적인 사람에서부터 정신병적 질환 환자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¹³⁾ 분열병 환자는 대개 거의가 외톨이가 많다는 것이 특징이다. 자기만의 환상이나 망상에 빠져 외부인과 접촉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떠한 계기로 이성에게 연애 감정을 품으면 대답하고 직설적이어서 피해자를 아주 놀라게 하거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고 환자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반응을 나타내기도 한다.

③ 偏執障礙 스토커(paranoid disorder stalking)

상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에로토마니아 즉, 연애망상은 오래전부터 있어온 전통적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유형은 대개 여자들로부터 강한 성향이 나타나며 자신보다 사회계층이 높은 저명인사가 피해자로 등장한다. 감수성이 높은 사춘기 학생들의 교사 스토킹에서, 중년 여성, 특히 혼자 있는 사람과 성적 불만자나 고독한 여성에게 특히 많다. 상대가 아무리 부인하거나 주위에서 설득해도 이해를 시킬 수가 없다.

④ 境界性 스토커(boderline personality)

스토커 중에도 가장 위험한 문제 유형이다. 이들은 인격적으로 미숙하고 어느 한 부분이 비정상적이다. 자기 중심적이고 남의 입장을 생각할 줄 모르는 한마디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유형이다.¹⁴⁾ 현대 사회가 복잡해지고 핵 가족화로 인하여 해체됨에 따라 경계성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심각한 사회 정신병리로 대두되고 있다. 이 경계성 스토커는 거의가 뜨내기며 직장도 없고 가정도 못 지키는 타입이 많다. 따라서 이들의 사랑은 서로를 위해 주고 아끼고 상대의 기분을 살피야 하는 주고받는 관계라는 의식이 전혀 없다. 마찌자와 일본 학자는 경계성형의 특징으로 ‘미움을 받는것에 민감하고 화가나면 곧 공격을 한다’라는 점을 들고 있다.¹⁵⁾ 감정 기복이 심하고 자기 뜻대로 안되면 폭발한다.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충동적인 성격적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이들은 행여 버림받지 않을까 대단히 민감하며 만성적인 공허감에 시달린다. 이 때문에 표적인 상대에게 매달리게 되며 거절하면 즉각 분노가 폭발하여 공격적으로 된다.

⑤ 自己愛性 스토커(narcissistic personality)

이들은 너무나 자기 자신에 도취한 나머지 남들이 나를 싫어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 더구나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나를 버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무슨 오해가 있거나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뿐 상대가 정말 나를 싫어한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의 거절 의사가 확실하다는 것을 의식하게 되면 심한 자존심

13) 정동욱, 법정에 서는 스토킹, 경영법무 제58권, 1999. 1.

14) 박병식, 스토킹 그 예방과 대책, 1999. 5. 참조.

15) 버림 받지 않으려고 비정상적인 노력, 이상화 결핍사이에 동요하는 불안정한 인간관계, 동일성 장애(현저하고 불안정한 자기상의 지속), 자상행위(약물남용 등 자기 상해), 자살행동 위협 혹은 자상 행위의 반복, 기분 반응성의 현저한 감정 불안정, 만성적인 공허감, 불안정하고 격한 분노 혹은 분노 억제 곤란, 일과성의 망상 관념.

의 상처를 받고 사랑은 그만 원한으로 바뀐다는 것이 특징이다.

⑥ 기타 類型들

이상 정신과적인 문제로서 대표적 유형들을 기술했지만 물론 이외에도 많은 유형이 있다. 약물남용, 우울, 성도착 유형도 있고 정신과적 진단이 애매한 독특한 인격장애 유형도 있다. 요즈음 거론되고 있는 ‘아이 같은 어른’(Adult Chidren)도 스토키의 한 유형으로 생각될 수 있다. 자기 중심적이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며 남의 기분을 살필 줄 모르며 의존과 독립 사이에 심한 동요를 보이는 등 마치 어린애 같은 어른이다. 이런 성격적 특징은 스토키와 같은 구조이다. 낮은 EQ도 스토키와 심리적 구조를 같이 하고 있다. 즉, 남에 대한 배려가 없고 공감 능력 및 자기 통제력의 부족 등이 꼭 닮았다. 최근 아직 공식 진단명은 없지만 사회적으로 문제시되는 일군의 인격 장애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점점 그 개념이나 실체가 뚜렷해지고 있다.¹⁶⁾

(2) 被害者의 類型

그렇다면 피해자들은 어떠한 타입의 유형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피해자의 유형부터 살펴보면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¹⁷⁾

① 戀愛人 型

대표적인 사건으로 미국의 유명한 존 레논 살해사건(1980)을 비롯해서 최근의 마돈나 스토키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인 화제가 된 경우가 있다. 이들은 처음엔 열광적인 팬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TV에서 웃는 모습이나 따뜻한 말이 자신만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차츰 혼자 갖고 싶어하는 욕구로 발전한다. 특히, 매력적인 모습에 반해 먼 곳에서 바라보는 것만으로 행복하다는 스토키도 있다. 몇 달을 말 한마디 없이 아파트, 방송국, 촬영장 어디나 멀찌감치 지켜만 본다. 요즘은 사설 경호 센터에 의뢰하고 있어 어느정도 그 피해를 감소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② 著名人士 型

이들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의 표적이 된다. 정치가나 기업가로서 널리 이름을 알리고 있는 사람과 교수와 의사 등이 주로 피해를 당하고 있다. 저명인사들로서 사회계층이 가해자와는 동떨어진 점에서 연애인스토키와 비슷한 유형이다.

③ 옛사랑 型

이 피해 유형은 가장 위험한 유형이다. 사귀다가 헤어진 옛 애인이나 파혼한 약혼자 또는 이혼한 경우 등 한때 당사자 사이는 깊은 관계를 가졌던 경우가 주로 사건이 된다. 물론 그냥 여느 친구처럼 사귀어왔던 사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사이던 어떤 시점에

16) 앞의 글, pp. 8 - 13.

17) 이시형 외, 앞의 글, pp. 5 - 8.

서 결별을 선언한 순간부터 집요한 스토킹이 시작된다. 상대의 기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다시 옛날처럼 되기를 애원 또는 강요한다. 다음은 협박으로 이어진다. 그래도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변심한데 대한 원한을 품고 신체적인 공격을 가하게 된다. 때로는 강간, 살인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 유형의 스토킹은 대개 남자이며 반사회적 성격인 경우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한다.

④ 未知人 형

미지인 스토킹은 전혀 모르는 사람을 집요하게 따라 다니는 유형이다. 죄없는 보통 사람이 표적이 될 수도 있다. 우연히 길에서 혹은 버스에서 본 사람을 첫 눈에 반해 따라다니기 시작한다. 스토킹 입장에서선 사랑의 가슴을 태우고 있지만 둘 사이엔 일면식조차 없다. 최근에는 지하철에서도 스토킹 범죄가 전개되고 있는 경향이다. 처음보는 사람에 호감을 느끼고 자신의 몸을 밀착시킨다거나 혹은 무작정 따라 다닌다거나 하는 등 카메라 등과 같은 장비를 이용하여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유형도 증가 추세에 있다.

2) 犯罪者의 特性

스토킹은 비교적 최근에 범죄로 규정된 행위이며, 다른 폭력범죄들과는 달리 일반적인 범죄신고를 통하여 그 범죄발생의 전모를 파악하기 곤란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로서는 이용가능한 경험적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스토킹의 발생 규모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다. 스토킹은 스토킹이 동시에 두 사람 이상에 대하여 행하여지지 않는 특성이 있으며 스토킹은 피해자의 행동과 감정을 통제하는 데에 집착하기도 한다. 또 많은 경우에 피해를 입음으로써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¹⁸⁾

스토킹의 행위유형은 가정폭력사건들과 매우 흡사하다. 스토킹이 피해자의 의지에 반하여 개인적인 관계를 이루려 하거나 혹은 이전의 관계를 지속시키려는 것과 같이 보통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의 의지가 좌절되었을 때 스토킹은 촉발되는 것이다.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자신으로부터 물질적인 공세가 전달됨으로써 관계를 만들려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반응이 호의적이지 않을 때는 폭력적으로 돌변하는 수도 있다. 위협적인 시도는 보통 피해자의 생활에 부적당하고 질시에 찬 침입의 형태로 시작된다. 이러한 접촉은 시간이 흐를수록 보다 빈발해지게 되고 그러한 행위들은 지속적인 추근거림의 형태가 된다. 거듭될수록 추근거리는 행위들이 위협적인 행위로 변하게 되고, 위협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방식으로 스토킹의 행위에 의해 명백히 혹은 은연중에 드러난다. 이러한 수준의 심각한 사건에 이르게 되면, 폭력 등과 같은 흉악한 범죄로 진행되기도 하고 급기야는 살인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한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권력과 통제관계를 수립하는데 실패한 스토킹

18) 박철현 외 2인, 앞의 글 재인용, pp. 31-36.

커는 피해자에 대한 지배를 다시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폭력을 사용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스토키의 사고유형은 일반적으로 상대를 얼마만큼 마음을 두고 있는지와 또는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각오로서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일념이 정신적으로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점에서 어느 단계에서 시작할 수도 있으며 또는 중간단계에서 처음단계로 회귀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스토키의 행위가 언제 시작될지도 모른다. 일반적으로 처음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고 수주 또는 수년에 걸쳐서 잠복하다가 재개하는 경우도 있다. 이같이 스토키 행위유형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특징들도 스토키 사건에 대하여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어렵게 한다.

스토킹은 성중립적인 범죄로서 남성과 여성 모두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스토키들은 남자들로 나타나 전체 스토키사건의 75-80%가 남자가 여자를 스토키하는 사건이다. 연령은 대부분이 20대에서 중년에 해당하였고 지능수준은 평균 이상을 보이고 있다. 스토키는 인종이나 사회경제적 배경은 특정한 집단에 해당되지 않고 고르게 분포하여 사실상 누구라도 스토키가 될 수 있고, 스토키 행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¹⁹⁾

미국의 스토키 피해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스토키 피해자 5명중 4명이 여성이고, 스토키 피해자중 38%는 20세에서 45세 사이의 독신여성들이었지만 10대 소녀나 40대 후반 이후의 여성들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었고, 가정폭력 피난처의 여성중 1/3가량이 스토키 피해자이었다고 보고되고 있다.²⁰⁾ 전남편이나 옛 애인에 의해 스토키를 당한 여성중 21%는 연애나 결혼관계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스토키가 발생하였고, 43%는 관계가 끝난후에 발생하였으며, 36%는 관계가 끝나기 전과 후에 모두 발생하였다고 응답하였다(VAWGO, 1998, 10). 또한 전체 미국 여성중 1.8%와 전체 미국 남성중 0.8%가 아는 사람에게 스토키를 당했다고 보고하였다.²¹⁾ 자신들이 왜 스토키를 당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스토키 피해자의 21%는 스토키의 소유욕 또는 지배욕이라고 응답하였고, 피해자중 단7%만이 스토키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거나 약물 또는 알콜중독자라고 응답하였다.²²⁾

대부분의 사건에서 스토키는 1년 이상 지속되었고, 일부사건들의 경우에 스토키가 5년 이상 지속된 경우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전 남편이나 전 애인과 같은 친밀한 사람으로부터의 스토키는 친하지 않았던 사람에 의한 스토키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내고 한다. 또한 스토키가 멈추게 되는 계기는 이주와 경찰의 개입이라고 응답하였다.

한편 스토키 피해자중 1/3 가량이 심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1/5 가량은 스토키로 인하여 직업을 잃게 되었으며, 7%의 피해자들은 이후로도 직업을 갖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스토키가 미치는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이 드러났다.²³⁾ 스토키는 많은 경우 감시의 형태로 나타나 피해자들이 어디를 가든 스토키 행위자가 그곳에 있는 경우가 많았

19) 앞의 글, pp. 33-34. 재인용.

20) NIJ, 1994.

21) Ibid, p. 12.

22) Ibid, p. 12.

23) NIJ, 1997.

다. 피해자의 동선에 따라 이동하고 또는 쪽지를 전달하는 수법으로 괴롭힘을 계속한다. 이러한 스토킹은 정신적·육체적 테러로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도망칠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지게 한다. 스토킹자들은 피해자의 일과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거나 편지를 뜯어보고 주위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동원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스토킹 행위자의 특성은 일정기간 지속성과 접근 및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이며, 상대의 의사를 생각할 줄 모르며, 행태로는 주로 쫓아다니기, 전화, 편지, 선물 등과 같은 수법이 동원된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불안감 및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로 행위를 저지르는 특성이 있으며 이에 희열을 느끼기도 하는 습성이 있다고 하겠다.

Ⅲ. 스토킹 犯罪의 警護的 對應方案

스토킹범죄의 안전대책으로서 법적·사회적 대책방안을 들 수가 있겠다. 그 내용으로는 여자경찰관제의 활용을 통한 조사체제와 피해자의 상담창구의 구축, 그리고 후속적인 조치로서 피해자의 치료방안과 법적 체제의 도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아울러 시큐리티 대책으로서 오프라인상에서의 일반대책과 사이버상에서의 안전대책을 살펴보고, 신변보호 대책으로서 개인호신장비의 활용과 경호서비스 및 신변보호기법의 활용 등을 고찰하였다.

1. 社會的 對應方案

1) 女子 警察官의 活用

수사활동을 행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조사는 필수 불가결하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일정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득이하지만, 경찰수사를 신뢰하여 피해신고를 한 피해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나아가 피해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뚜렷한 피해를 입은 스토킹 피해자에 대해서는 식견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여자경찰관이 조사를 행하는 등, 피해자의 정신적인 부담을 줄이고 스토킹범죄 수사를 적정하고 강력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스토킹범죄 수사를 행함에 있어서는 범죄피해자 대책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수사를 행하여야 한다. 현재 스토킹범죄 수사전문 조사관의 육성이나 범죄 수사시의 특유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수사기법의 개발 등 피해자의 입장까지 배려한 대응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스토킹범죄 피해자에게 정신적 타격을 주어 수치심에서 경찰에 대한 피해신고를 주저하는 경향이 강한 범죄에 대하여 신고 촉진을 위한 방안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는 스토킹범죄피해의 잠재화 방지라는 점에서도 문제가 많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1996년 2월 “피해자대책요강”을 제정하여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각

중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성범죄 수사분야에서는 “성범죄 수사지도관(搜查指導官)의 설치” 및 “여자경찰관에 의한 조사의 확대” 등을 정하여, 피해자의 조사를 적절하게 행함으로써 피해의 잠재화 방지와 피해자의 저인적 부담을 도모하고 있다.

피해자의 조사는 수사의 성패를 가르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지만, 반면에 피해자에게 커다란 부담을 주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성범죄 피해자는 조사방법에 따라서는 대단히 큰 정신적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그런데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조사는 대부분의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남자수사관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범죄의 성격상, 이성에게는 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남자경찰관 앞에서 긴장하여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거나,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거부반응을 나타내는 등 피해자에게 더욱 큰 정신적 부담을 주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에 일본에서는 여자경찰관에 의한 조사를 확대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부담을 줄이고자 한 것이다. 다만, 모든 피해자가 여자경찰관의 조사를 희망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가급적 피해자의 희망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여자경찰관에게 요구되는 활동은 수사에 국한되지 않아야 한다. 피해가 급진전되어 성범죄의 단계로까지 발전된 경우, 피해자 신체로부터의 증거자료의 채취, 병원에의 동반, 현장검증의 입회 등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피해자의 신체로부터 증거자료를 채취하는 일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여자경찰관이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에 일본에서는 의사에 의한 증거채취가 아닌 경우에는 여자경찰관이나 여성직원에게 의해 증거를 채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범죄피해 상황을 재현하는 현장검증은 피해자에게 피해 장면을 상기시킬 뿐만 아니라, 시각적 작용도 수반하여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부담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여자경찰관이 입회하여 피해자에게 용기를 북돋우는 등 정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스토킹범죄 수사에 있어서는 여자경찰관의 폭넓은 활동이 기대되고 있으며, 스토킹범죄 수사에 종사하는 여자경찰관은 평소부터 피해자 심리에 관한 기초지식, 상담기술 등을 습득하고 조사, 현장검증 등 각종 수사활동에서 스토킹과 성범죄 수사에 특유한 수법을 습득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부담을 줄여 피해자를 배려한 수사를 행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스토킹범죄 수사에 종사하는 여자경찰관은 카운슬링에 관한 교양을 배워 피해자의 심리를 이해하고 그에 적합한 대응방법을 습득함으로써 제2차적 피해를 방지하고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정신적 부담의 경감을 꾀하며, 상담의 지식과 기술을 응용하여 스토킹범죄 수사를 적절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카운슬링이 필요한 경우도 적지 않다. 다만, 수사부문의 경찰관이 장기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기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각종 기관·단체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스토킹범죄 피해자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²⁴⁾

24) 警察廳刑事局捜査第一課 監수, 警察廳性犯罪捜査研究會 편저, 性犯罪被害者對應ハンドブック, 立花書房, 1999/6, pp. 35-44.

한편, 일본에서의 도도부현(都道府縣) 경찰은 성범죄의 피해와 수사에 관한 상담창구로 「성범죄 피해 110번」 등의 전화상담과 「성범죄피해자 상담코너」 등의 상담실을 설치하고 있으며 여자경찰관이 상담에 응하고 있다. 또한 성범죄 피해여성의 안전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의 특성, 범죄발생상황 등을 감안해 「여성상담파출소(女性相談交番)」을 지정하여 여자경찰관이 성범죄 등에 관한 상담과 피해신고에 대응하고 있다.²⁵⁾ 여성상담파출소에서는 상담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받기 위해 외부로부터의 시선이나 방음에 배려하여 여성이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에 노력하고 있으며, 상담날짜나 시간대를 알기 쉽게 표시함으로써 상담자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다. 여자경찰관은 방문·전화 등에 의한 여성의 상담에 대응하는 한편, 상담자의 요청에 부응한 가정방문, 상담자 거주지역 주변의 순찰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성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받는 정신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찰본부의 성범죄수사지도계나 주요 경찰서의 성범죄수사 담당부서에 여자경찰관의 배치를 추진하여,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수사에 임하는 성범죄 수사원으로 여자경찰관을 지정하고 있다.²⁶⁾

특히 피해 청소년의 경우, 정신적 타격을 감경하기 위해서는 카운슬링(counseling) 등 심리학적 수법의 이용,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 가정환경을 조사함으로써 정신적인 측면이나 환경적인 측면의 장애 요인을 제거하면서 지속적인 지원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예에 소년경찰부서에는 소년의 특성이나 취급에 대한 지식·기능을 소년보도직원, 소년상담전문 직원을 배치하여 세심한 지원을 행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요청되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체제를 정비하고 있다. 그리고 상담 직원들의 능력 향상을 꾀하기 위해 피해소년의 심리에 관한 지식과 상담기술의 습득·향상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외부에서 실시되고 있는 각종 전문강좌 등을 적극적으로 수강시키고 있다. 또 심리학 등 전문지식과 상담 등 전문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임상심리학, 정신의학 등 지식·기능을 가진 대학의 연구자, 정신과 의사, 임상심리사 등을 「피해소년 카운슬링 어드바이저(counseling advisor)」로 위촉하여 필요한 조언을 받고 있으며, 보호자와의 긴밀한 협조 아래 환경의 변화와 생활상황을 파악하고 방문활동 등을 행하는 자원봉사자와의 협조를 위해, 9개 모델지역을 선정하여 자원봉사자를 「피해소년(supporter)」로 위촉하고 이들과 연계하여 지원활동을 행하고 있다.²⁷⁾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체제의 정비를 통해 일본의 성범죄 상담창구와 마찬가지로 스토킥범죄의 경우에도 이러한 여자경찰의 상담관제를 적극 도입하고 활성화시킴으로서 피해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더 나아가 범죄자의 원인분석에의 접근에도 일조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대응은 물론,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25) 1997년말 현재 전국 194개 파출소(交番)가 여성상담파출소로 지정되어 있음.

26) 1999년 4월 현재, 성범죄 수사원으로 지정된 여자경찰관은 1,759명에 달함. 警察廳 編, 「警察白書(1998)」, pp. 74~77 참조.

27) 警察廳 編, 「警察白書(1998)」, p. 79 참조.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현 사회적인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2) 常談體制의 構築

전문적인 상담기관은 피해자들이 정신적·신체적·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창구로서 체제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상담을 하는 것은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스토킹범죄가 중범죄이고 위법행위이며 무엇보다도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인식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피해자들의 비중이 높은 여성들의 경우, 이러한 상담과정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객관화시켜 보고 자기자신이 처리해야 할 문제들을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필요시 고소의 전 과정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기타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성폭력상담소에서는 그 동안 피해자와의 상담에 의한 경험을 바탕으로 심리적 지원 상담의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1996년 10월부터 심리 상담전문가들로 구성된 심리상담지원위원회를 통해 상담지원을 하고 있으며, 아울러 의료적 지원병원연계는 산부인과와 정신과 전문의와 연계하여 활동하고 있다. 상담원들이 피해자에게 의료적 지원에 대한 안내를 하고 필요시 전문의료기관에 연계하여 주며 필요시 의료기관까지 동행해 주기도 한다. 또한 법적 지원으로서 매주 1회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고소를 원하는 내담자에게는 직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전문 상담체제의 구축은 스토킹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며, 사회적으로 스토킹범죄의 확산에 대한 방지와 범죄예방 측면에서 반드시 요구된다고 하겠다.

3) 醫療的 對處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입는 피해에는 일련의 진행범죄임을 감안하면, 처음에는 미행이나 잠복이 이루어지고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점차 협박과 폭행, 그리고 주거침입, 상해 및 강간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범죄행위에 의해 신체에 상해를 입는 신체적 피해, 정신적으로 쇼크를 받는 정신적 피해, 상처의 치료비의 부담 등에 의한 경제적 피해 등 범죄행위 자체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 외에 피해후의 형사절차, 의사의 대응에 의해 새롭게 받는 정신적 쇼크나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주위나 보도기관으로부터 불이익·불쾌한 취급을 받는 등 제2차적 피해를 입게 된다.

스토킹 피해자가 입는 신체적 피해에는 범인으로부터 입은 폭행 혹은 간음에 의한 각종 외상, 성행위로 감염하는 성병, 임신, 불임, 각종질환 등이 있다. 또한 신체적 피해 외에 정신적인 상처가 대단히 크다. 개인이 컨트롤할 수 없고 개인의 능력으로는 효과적인 대처가 불가능한 것도 있다. 이러한 피해자는 지역사회에 위치해 있는 병원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피해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신속하게 접수처리가 되어 응급실내 피해자를 위한 특별장소나 혹은 프라이버시가 보장된 공간으로 인도되어야 한다. 모든 의

료절차는 피해자에게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은 후에 실시하도록 하며, 의료서비스는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의료서비스 및 사후의료서비스에 관하여 훈련을 받은 의사와 간호사 및 기타 관련 인력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²⁸⁾ 한편, 이와는 대조적으로서 가해자에 대한 치료적 방안을 들 수가 있다. 이는 간략히 언급하면 즉, 가해자측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해자에 대한 대안적 치료에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대안적 방법으로서 가해자가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스토킹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도움을 받기에도 용이한 일은 아니지만 가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기를 기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사회봉사명령 같은 것과 같이 가해자에게도 처벌의 일환으로 강제 치료를 판결에 포함시키는 방법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²⁹⁾

2. 法的 對應方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나라는 스토킹과 같은 행위유형을 규제하는 법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고, 따라서 현재로서는 동종의 행태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 및 형법 등과 같은 기존의 법률에 의거하여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³⁰⁾

한편, 우리 나라의 경우도 인권위원회의 전 국회의원 이기문 의원이 스토킹 범죄의 방지 법안에 대해 초안을 잡은 바 있으며, 상정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 의원직 면직을 당하게 사건으로 말미암아 한참 주춤 하다가 법제사법위원회의 김병태 의원이 이를 맡아 1999년 5월 국회에 상정하였으나 결국 입법화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결국, 스토킹과 같은 행위유형을 처벌할 수 있는 현행법은 경범죄처벌법,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28) 警察大學警察政策研究センター, 英國における性犯罪被害者對策, 1997/8, pp. 21-24

29) 이인숙, 성폭력과 사회복지, 강남대학교 출판부, 1998. 6. p. 362.

30) 우리 나라는 미국과 같은 스토킹 자체에 대한 독립된 처벌법규가 없으며, 외형적인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경범죄처벌법'으로 극히 경미한 처벌에 그치며, 실제 스토킹 범죄라는 측면에서 단순한 사례는 거의 없다. 그렇다면 현행법상 처벌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다음에서 소개하기로 한다. ① 경범죄 처벌법(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 정당한 이유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또는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제1조 제24호) /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 또는 편지를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동조 제53호).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자기 또는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14조). ③ 형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스토킹이 직접적인 폭력행사로 이어진 경우에는 형법상의 폭행, 상해, 체포, 감금,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응, 손괴죄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처벌 가능.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벌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놓이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지난해 필요성을 인식하고 학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뜻 있는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입법안으로 올라갔던 스토킹 방지법안에 대해 국회 사무처 법제실 자료에 의하여 동법안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스토킹은 그 행위의 지속성과 집요함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인식의 부족과 현행 법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방치되어 왔던 바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여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경미한 사안이나 특수한 사안에 대하여는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 안정된 사회질서를 유지하도록 함에 있어 제안 이유로 들고 있다.

증가하고 있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 스토킹방지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중요한 것은 기존법률로 보호받기 이전에, 범죄 피해의 징후가 예측되는 시점과 피해 진행중의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얼마만큼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냐 하는 것이 여기에서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핵심인 것이다. 따라서 특별법이 제정되면 두 가지 측면의 목적을 갖는데, 하나는 피해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파괴하는 스토킹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와 같은 스토킹이 폭력 등과 같은 더 큰 피해로 진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스토킹 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3. 警護的 對應方案

1) 一般的 安全對策

막상 본인이 스토킹의 표적이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부모나 가족 친구 혹은 시큐리티 전문기관의 종사자나 정신과 의사와 의논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기도 하나, 경찰에 가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스토킹의 위험이 조금이라도 노출되었다고 느껴질 때부터 스토킹 피해 정도가 심해져서 신고를 하거나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까지 대처 방안에 대해 피해자의 입장에서 퇴치할 수 있는 사전 예방법과 일반적 안전대책을 소개하고자 한다.³¹⁾³²⁾³³⁾³⁴⁾³⁵⁾³⁶⁾

스토킹과 접촉 중에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증인이 있는 곳에서 빨리 “아니오”라고 말한다. 이는 범죄 심리적인 측면에서 사전 범죄 욕구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애매 모호한 태

31) 이상철, 안전대책론(용인대학교 경호학과), pp. 260-263, pp. 282-283 참고.

32) 이시형, “현대사회와 스토킹”, 강북삼성병원 삼성연구소 사회정신건강연구소, 1998, 12 pp. 22-24.

33) 에스원, 범죄예방연구소, 세콤25시, 2000년 1월호.

34) 원호택, 이상심리학(서울, 박영사), pp. 371-373.

35) 조중신, 성폭력 상담에 나타난 스토킹, 시민과 변호사 64호, 1999년 5월 p. 47.

36) The National Center for Crime home page(<http://www.ncvc.org/infolink/svsafety.htm>) 참조.

도의 행동은 스토키에게 심리적인 자신감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싫은 이유도 구차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시간이 필요하다든지, 아직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불확실한 말은 금물이다. 오히려 스토키들로 하여금 더욱 집요하게 피해자를 공략한다면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는다. 또한,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들의 도움을 청하는 방법도 좋다. 스토키ng 욕구를 현저히 감소시킬 수가 있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가족이나 특히, 어린이들의 소재나 행방을 항상 파악해 둔다.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에 이들이 스토키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며, 학교나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거나 항상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야 한다. 꽃이나 편지 등 우편물 수령도 거절한다. 주소가 밝혀있으면, 수취인 거부 의사를 밝힐 경우 우편물은 되돌아가지만 주소가 불명확하면 반드시 곧바로 뜯지 말고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스토키ng 범죄의 징후가 사전에 포착되면,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집 안 밖 문의 열쇠를 모두 바꾸는 방법도 좋다. 특히, 혼자서 길을 걷거나 쇼핑하지 말아야 한다. 스토키는 피해자를 일거수 일투족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심은 금물이다. 또한, 한가지 길로만 다니는 것보다 여러 가지 길로 다니는 방법도 좋은 지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스토키의 반응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것이 좋다.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기보다는 소유하고 정복하려는 사람이나 자기중심적이고 집요한 성격의 사람은 조심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스토키로서 잠재적 징후가 높은 타입이므로 사전에 빌미를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상식에 벗어난 호의나 친절을 베풀거나, 상대의 불쾌나 고통을 받아들이지 않는 일방적인 사람은 조심한다.

만약,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증거자료를 계속 수집하고 사건경위를 육하원칙으로 자세히 기록해 둔다. 경찰의 피해 신고시 결정적인 증거자료가 된다.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모든 상황을 축소하지 말고 상세히 설명한다. 장기간 피해를 겪고 있는 경우라면, 상담소나 경찰에 도움을 청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기 위해 미약한 처벌이 나오더라도 계속 신고나 고소를 함으로서 피해자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도록 한다.

차량으로 이동시에는 인적이 드물거나 어두운 곳에는 주차하거나 정차하지 않는다. 가급적이면 주행중이라 할지라도 도어를 반드시 잠그어 운행하고 정차시에도 주위가 안전한가를 살펴보고 안전이 확인되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이러한 단계까지 진행되었다면, 곤란한 경우 사설 경호업체에 의뢰하거나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집 밖에서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만일의 사태에 즉시 신고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과 단 시간내에 연락이 가능할 수 있도록 휴대폰 기능에 단축기능 버튼을 설정해 놓는다. 가정에서는 쓰레기 분리 수거시 다른 쓰레기가 많이 쌓일 때 내다 버릴 수 있도록 한다. 심한 경우 사소한 단서를 찾기 위해 쓰레기까지 뒤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집안에서는 전화기 옆에 이웃이나 경찰의 전화번호를 적어두어 비상시에 대처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거주자의 이름,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때문에 표시하지 않아야 한다. 가해자로부터 쉽게 표적에 노출된다.

외출 후 집에 돌아올 때는 낯선 사람이 뒤따라 들어오지 않는가 잘 살펴보아야 한다. 피해자의 사소한 관심이 더 큰 범죄진행을 억제 할 수도 있다. 스토커의 징후가 느껴지고 발견되면 반드시 방법 체크 포인트를 메뉴얼화 시킨다.³⁷⁾ 이러한 방법은 1차적인 방어책으로 경찰에 도움을 받기전의 애매한 경우에 피해자 자신에 대한 최소한의 노력이다.

이상과 같이 사전 예방적인 측면에서의 자구책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은, 우리 주위에서 스토킹을 추방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스토킹은 상대방의 인격과 존엄성을 해치는 비도덕적 행위이고 인간으로서 최저수준의 행동이라는 인식을 널리 알려 스토커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과 무가치성을 자각하게 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 하겠다.³⁸⁾ 아울러, 평상시 가까운 체육관을 찾아 태권도나 유도, 합기도 등을 습득해 놓으면 불가피하게 스토커와 직면했을 시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37) 스토킹과 관련하여, 일본 경시청 방법대책 요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문단속과 관련.

- 아파트나 맨션의 현관, 베란다, 목욕탕 등의 창을 자물쇠로 잠근다.
- 창을 이중으로 잠근다.
- 커튼을 활짝 열어놓지 않는다.

2. 문 밖에서의 주의할 점.

- 사람이 잘 통행하지 않는 거리를 혼자 걸을 때는 방법 부저(호신용알람)를 지참하고 다닌다.
- 자신이 통행하는 길을 머릿속에 기억해 둔다. 스토커가 따라 붙었을 때 긴급히 피난할 수 있는 파출소라든지 슈퍼 등의 장소를 알아둔다.
- 사람이 잘 통행하지 않는 장소에서는 길을 묻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주의한다. 길을 묻는 척하면서 차에 끌려가는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 그런 장소에서 폭행을 당하게 될 경우 필요 이상으로 소란을 피우지 않는다. 가능한 한 상대를 자극하지 않도록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처한다.

3. 집에 있을 때의 주의점.

- 집에 있을 때, “가스 점검입니다.”, “우편물입니다.” 등의 소리가 들리면, 곧바로 문을 열어주지 말고 도어 아이를 통해 우선 확인한 후, 방범용 체인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상대의 신분을 확인한다.
- 현관을 나설 때에도 밖에 이상한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도어아이로 엿보는 등의 확인을 한다.
- 엘리베이터에 탈 때에는 비상벨 근처에 선다.
- 이상한 사람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에는 각층의 승강기 버튼을 누르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상과 같이 비단 일본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세계 각국의 공통점이 될 수 있다.

38) 정동욱, 앞의 글 재인용.

으로 사료된다. 특히, 많은 체육관에서는 스토킹과 관련하여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호신기법을 가르치는 곳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3) 護身的 對應方案

(1) 個人 護身裝備의 活用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킨다는 것은 현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이다. 특히 혼자 사는 여성이라면 이런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제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돈으로 치장해야 하는 세상이 되었는지도 모른다.³⁹⁾ 밤을 이용하는 범죄자들의 약점은 빛이다. 예를 들면, 베란다나 현관이라는 곳은 침입하기가 쉽다. 이런 곳에는 사람을 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 이케부쿠로에 있는 시큐리티숍이나 오마루 도쿄점의 여행용품 매장에서는 스토킹격퇴용 방법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이런 상품들이 일본에 등장한 것은 1996년 10월로 추정된다. 이곳에는 상대의 눈을 속일 수 있고 강력한 라이트가 부착되어 있는 경보 사이렌이나 누구라도 간단히 설치할 수 있는 도어 체인 등의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다. 딸을 위해 아버지가 구입해 가는 경우라든지 애인을 위해 젊은 남성이 물건을 구입해 가는 모습이 증가하는 추세로서 평일에는 하루 50-60개에서 주말에는 100개이상의 판매고를 넘는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팔리는 것은 알람 사이렌이라는 제품이다. 이 경보기는 반경 1km까지 전자음의 부저가 울려퍼지기 때문에, 이 소리에 스토킹자가 주눅들었을 때 도망칠 수 있다. 또 전자음 소리가 매우 크기 때문에 자기 신변의 위험을 알려주는 의미에서도 매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전문점에 놓여 있는 상품들의 기본적인 특징은 삐삐사이즈의 방범 부저나 휘슬 종류를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는 점이다. 그 중의 좀 독특한 상품이라면, 사이렌이 붙어 있으면서 경찰봉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약 20cm정도의 길이로 되어 있는 회중전등을 들 수 있다. 그 밖의 방범 상품 전문점에는 눈물이 나와 수분간 움직일 수 없게 하는 립스틱 형태의 최루 스프레이가 여성들이 사용하는 데 아주 적합하며, 액체 타입과 분무 타입으로 되어 있다. 또한 사이즈도 3가지로 구분된다. 또 보통 사용시에는 키홀더를 대신하여 가방에 설치할 수 있는 귀여운 동물 캐릭터 상품들도 있으며, 위급한 상황이라면 큰 음향을 울리게 되는 휴대용 경보 부저 등의 상품도 나돌고 있다. 또한 현관문의 엿보기 구멍(도어아이)에 설치하면, 방문한 사람을 확대하여 스크린으로 영상화해 주는 기기나 베란다로부터 침입해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경고 센서 등 집안에 설치할 수 있는 타입의 상품들도 판매되고 있다. 문 앞을 사람이 통과하면, 개가 짖는 소리를 내는 경보기도 있다.

그 외에도 보디가드용 상품으로 세이프티댄이라는 키 큰 남성의 인형도 수입되고 있다.

39) 이용표, 스토킹 이야기(명지사), 1999, 5, pp. 295-298.

케빈코스트너형과 아놀드 슈왈츠제네거형의 제품들도 있다고 한다. 이 제품들을 혼자사는 여성의 집 창쪽에 뒷모습이 밖으로 향하도록 놓아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차의 조수석에 놓아두고 운전하는 여성들도 있다. 인형처럼 부산을 떨지 않고도 간단한 대책의 한 가지는, 현관에 남성의 구두나 슬리퍼를 진열해 둔다든지, 때때로 세탁물 속에다 일부러 남성의 속옷 등을 말리는 방법을 들 수가 있다. 또 베란다에 캔맥주통을 놓아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베란다를 넘어 침입할 때 시끄러운 소리가 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되는 것이다.

방법 전용 상품은 아니지만, 혹시나 하는 경우에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예를 들면 단축 기능에 119번을 입력해 두고 곧바로 걸 수 있도록 해 두는 것이다. 만약 시간적으로 부족하다면, ‘경찰서지요’ 하고 119와 말하는 시늉을 한다.

미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시큐리티 상품으로는 착색 스프레이란 것이 있다. 색깔이 들어 있는 액체를 뿜어내는 것이지만, 인체에는 무해하다고 한다. 일단 이 스프레이가 옷에 묻으면 1주일 정도는 지워지지 않는다고 한다. 이 액체를 증거물로 하여 이 남성이 범인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제품과 유사한 제품으로 검정색 구두를 닦는 스프레이를 지참하고 다니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흉악범에게 습격당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호신구로는, 고전압을 흘리기 때문에 근육과 감각의 마비를 발생하게 하는 스탕간이다. 이런 호신용품들은 사용방법을 알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며, 또한 사용을 잘못하면 흉기로 돌변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여성들이 많이 지참하고 다니는 것이 최루 스프레이이다. 최루 스프레이나 스탕간은 상대에게 빼앗기면 그 순간부터 흉기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오히려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준 격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위험한 장면에서는 자신의 신변을 구하기 위한 제품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확실히 상대에게 위협을 줄 수는 있지만 적에게 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제품들보다는 주위에 자신의 위험을 알리는 알람 기능의 제품들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최선책일 듯 싶다. 그러면, 아래에서는 스토크를 퇴치하기 위한 방법호신용품들을 살펴보고 그 용도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호신은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그 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처음부터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장소나 시간에는 철저히 가까이하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위협에 당했을 때 어떻게 회피하는가 하는 것이다. 호신에는 전자가 훌륭한 방법이지만, 요즘같은 경우에는 천재지변은 물론 인재(人災)도 언제 일어날른지 모르기 때문에 장담하기 어렵다. 특히 최근에는 흉악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경찰에 자신의 안전을 의지하는 시대가 지났다는 것을 감안하면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키기 위한 호신용품의 구입·휴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警護서비스 및 護身技法의 活用

① 警護서비스

경호란 용어가 널리 상용되기 시작한 시기는 최근의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경호라는 인식이 국가 통수권자나 국가 주요인사 경호와 같은 특정 정부요인만을 위한 특별한 업무로 간주되어 왔다.

경호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의미로 사용된 계기는 1948년 정부수립이후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등의 불안한 상태에서 국가원수에 대한 강력한 보호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부터이다. 한편, 사경호는 자본주의의 파생적 원리로서 개개인의 신변보호를 위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경호산업의 상업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즉,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경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에게 일정한 댓가를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통해 전문화된 서비스로 제공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사경호 상업화는 공식적으로 1995년 12월 30일 경비업법(법률 제5124호 개정)에 신변보호업무가 포함되면서 본격화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공공의 질서를 위해 경찰은 치안의 제 일선에 서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날로 흉폭화되는 범죄와 고도화·지능화되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찰력의 한계로는 첫째, 경찰인력의 부족 둘째, 업무의 과중 셋째, 경찰장비의 노후화 등을 들고 있다.⁴⁰⁾

경호원을 고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첫째는, 사설경호업체에 의뢰하는 방법의 업체 경호원이 있으며 둘째, 수요자 자신이 직접 고용하는 개인 경호원이 있다. 이는 서로 장단점이 있으며 현재의 추세는 직접 의뢰인 자신이 개인 경호원을 고용하는 추세에 이르고 있다. 업체의 경호원을 채용시에는 필요할 때마다 부분적으로 채용할 수가 있어 상황에 맞게 효율적인 반면 의뢰자의 개인 프라이버시와 정보로부터 어느 정도 계약을 받는 취약성이 있을 수 있다. 한편, 가까운 일본에서는 2000년 8월 현재 경호업체는 64개에 달하고 있으며, 종사인원은 575명에 이르고 있다.⁴¹⁾ 우리나라는 2000년 12월 현재, 사설 경호·경비업체의 수가 1,838개 이고 종사인원은 81,819명에 이르고 있다.

이로 인하여 각종언론과 매체에서는 시큐리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또한 영화와 TV드라마의 주연으로(ex.보디가드) 등장하면서 젊은이들에게는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으며 일반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경호서비스를 받게되는 시대가 왔던 것이다. 또 이와 함께 사회의 요구에 발맞추어 각 대학에서도 경호 및 안전과 관련된 학과를 개설하면서 본격화되기에 이르렀고 많은 고급 경호원들이 탄생되고 있다.

신중 범죄인 스토킹 행위를 사전에 퇴치하며 예방하고 대책하는 차원에서도 경호요원의 필요성이 인식된다. 지금까지 앞에서 언급하였던 내용들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태도였다면, 경호원을 고용하는 방법은 보다 나은 예방 및 퇴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까운 경호회사에 상담을 의뢰하면, 고객의 취향과 요구에 따라 시간제 및 출·퇴근 경호까지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고객의 이미지와 직업까지 고려해서 최적의 경호상

40) 이윤근, 민간경비론, 서울:엑스퍼트 월드, 2001.

41) 이윤근, 앞의 글 재인용, 2001.

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심지어 스톱킹 상품을 전문적으로 내놓은 경호회사도 있다.

그러면, 경호회사들의 스톱킹과 관련한 서비스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⁴²⁾ 경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 개인이 의뢰 요청을 하게 되면 상담과 면담 후 계약이 체결되어 지고, 업무내용의 여러 가지 위험요소와 상황과약이 이루어지며 임무가 주어지면 현장에 출동해서 서비스를 받게 된다. 보통, 업체에서는 의뢰자가 1인의 경우 위협 및 협박 등의 정도가 경미하고, 의전 등의 예우가 필요할 때 경호원은 1인 1조로 운용된다. 또한 사업상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이동 등의 업무를 요할 때는 2인 1조, 행사장이나 기타 혼잡한 장소·이동횟수가 많을 경우 3인 1조로 운용되는 등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경호요원의 운용이 달라지게 된다.

경호원의 근무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출근해서 업무와 시간 내에 근무하고 퇴근하는 출·퇴근 근무와 지방행사나 기타 숙식 근무형태에 따라 경호대상자와 동숙하는 등의 지속적인 근무를 필요로 할 때의 24시간 근무체제로 나뉘어진다. 스톱킹행위에 대해 아주 전문적이거나 근본적인 요건을 퇴치하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겠지만 스톱킹의 예방 및 퇴치하는 방법으로서 경호원을 고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책임에는 틀림없다. 끝으로 업체에서는 스톱킹과 관련한 전문지식을 쌓고 연구하는 자세로서 꾸준히 장비를 개발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여야 할 것이다.

② 護身技法의 活用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장비를 이용하는 방법과 경호서비스에 대한 사전 대처적인 방법의 일부를 기술하였다. 그렇다면 일정절차가 진행되어 경찰의 도움을 받기전 급박한 상황에 직면했다면 개인적으로 최후의 수단인 신변 보호기법으로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이 기법은 보통 호신술이라 일컬어진다. 호신기법은 상황에 따라 즉각적인 반응이 가능하고 또 누구나 쉽게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대중성을 특징으로 한다. 특히 여성의 경우, 완력이 센 남성 공격자에 대응하여 신체적으로 현저하게 열세에 있는 여성의 여건상 습득의 용이성과 함께 힘을 덜 들고도 효과가 크며 또한 기법이 간단하며 실용성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 무도처럼 전문적이고 특수적이며 일정기간의 훈련이 필요하다면, 호신술은 일반적이면서 단기간으로 누구나 쉽게 습득이 가능하다. 신변보호기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질 수 있다.⁴³⁾⁴⁴⁾⁴⁵⁾

첫째, 최선의 방어법인 선수(先手)이다.

호신기법에 있어서 선수란 대단히 중요하다. 이미 정신적·심리적 원칙의 우선순위로 대비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선수는 미리 준비하는데서 이루어진다. 여기에는 냉정한 심리상태와 적극적인 투쟁 의욕, 전의 집중, 사력을 다하는 자세 등 정신적·심리적 제반 원칙

42) <http://www.starsafeguard.com/index.html>. 참고.

43) 이용복, 위협할 때 호루라기 3번, 성폭력 퇴치 위험별 사례, 대원사, 1992, 7. pp. 60-70 참고.

44) <http://www.cwd.go.kr> 참고.

45) <http://www.nis.go.kr> 참고.

이 충동원되어야 한다. 만약에 이러한 자세가 갖추어진다면 상대의 심리라든가 행동의 기미를 간파하여 상대가 움직이고 가해가 이루어지기전에 범행 의지를 사전에 봉쇄 및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상황에서는 다소 이론적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상황이 재현되고 또 웬만큼 숙달되지 않고서는 보통 사람에게는 많은 무리수가 따를 것이므로 꾸준한 호신기법의 연마가 필요한 것이다.

둘째, 호신법의 기본인 탈출법이다.

특히, 스토킹 범죄자의 경우 가해방식이 어떻게 진행되든 간에 결국에는 상대에게 붙잡히게 되는 단계에 이를 수 있다. 이때 자신의 몸을 이탈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호신기법의 핵심인 것이다. 보통 무도의 경기적인 측면과는 달리 초기의 스토킹 범죄자는 단순히 신체상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허점의 노출 반경이 크다. 이때 조금만 신경쓰면 잡힌 몸을 이탈시키는 것은 그리 어렵지가 않다.

호신기법의 원리를 크게 4가지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제 1원리는 상대의 힘에 순응하는 것이다. 비교적 범행자의 심리상태는 고조된 상태이므로 일반적으로 완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범행자의 완력에 대응하면 탈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 제 2원리는 몸 전체를 이용하는 것이다. 힘은 질량×속도이므로 체중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속도가 느리면 아무소용이 없으니 순간적인 힘의 집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여성의 경우, 남성에 대하여 힘으로 저항할 때는 몸 전체의 무게의 무게와 힘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 3원리는 신체의 턴(turn)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팽이 원리인 것이다.⁴⁶⁾ 신체 운동학(kinesiology)으로 분석해보면 신체 운동에는 일제히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병진운동(並進運動)과 각 부분이 동일한 점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회전운동이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힘에 순응하는 원리는 병진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신체의 회전은 자연히 상대방의 목표가 되는 몸이 이동되며 상대방의 힘을 미끄러지게 한다. 이것은 마치 공 위에 공을 올려놓았을 때의 형상과 같은 것이다. 제 4원리는 틈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손목을 잡혔다고 가정할 때 손가락의 틈은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즉, 손목을 빼려면 손가락 쪽으로 빼내야 하는 것이다. 인체의 신체 구조상에 관절은 항상 안으로만 굽혀지게 되어 있다.

세 번째 역공격 기법이다.

역공격 기법에는 크게 3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설명되어 질 수가 있다. 첫째는 급소 타격법이다. 이는 상대방의 목, 눈, 귀, 미간, 인중, 겨드랑이, 관자놀이, 턱, 명치, 낭심 등과 같은 신체상에 취약한 부분에 대하여 대상으로 삼는다.⁴⁷⁾ 이곳을 손으로 찌르거나 주먹으로 치게 되면 상대에게 심한 타격을 입히게 된다. 여성의 경우에는 주먹보다는 손바닥이나 손모서리 등으로 가격하는 것이 좋다. 비교적 신체적으로 아래부분에 취약한 곳은 정강이나 무릎 또는 오금 등을 들 수 있다. 이곳은 일시적이거나 신체의 균형을 무너뜨리는데 유리

46) 도미끼젠지, 호신술 입문, 1979, 3, p. 114 참고.

47) 신현덕, 대중호신술 교본, 1993, 12. pp. 96-98 참조.

한 공격 목표이다. 두 번째는 관절 제압법이다. 관절을 꺾거나 비틀어서 가해자를 제압하는 기술은 호신법에서 가장 보편화된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절기는 주로 손목 꺾기와 팔꿈치 비틀기로 분류 할 수 있다. 세 번째 마지막 방법은 넘어뜨리기이다. 가해자인 상대를 넘어뜨림으로써 도망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거나 제공격 할 틈을 얻을 수 있다. 넘어뜨리는 기술은 씨름이나 유도처럼 붙잡아 메치거나 걸어 넘어뜨릴 수가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최상의 호신방법은 피해자 자신이 스스로 사전에 신변 안전에 대한 의식을 갖고 사전에 원천 봉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호신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IV. 結 論

최근 우리사회에서 날로 그 심각성이 더해가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실태와 경호적 대응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스토킹범죄는 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라 등장한 신종범죄의 한 유형이다. 스토킹범죄의 초기에는 특정 유명인이나 연애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최근에는 일반인들까지 그 피해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스토킹범죄의 형태는 초기에는 미행이나 잠복, 감시, 협박에서 심하면 폭행, 강간, 살인까지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대책에 관한 내용으로는 첫째, 사회적 대응방안 둘째, 법적 대응방안 셋째, 경호적 대응방안의 제공에 두고 있다.

먼저 사회적 방안으로는 스토킹범죄의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인 점을 감안하여 피해자들의 심적부담감 및 인권적 차원에서 여자경찰관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정신적·신체적·법률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심리적 지원상담을 위한 상담체제의 구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스토킹범죄의 피해상황이 폭행, 강간, 살인으로까지 발전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측면의 의료적 대처방안을 제시하였다. 법적 대응방안으로는 개별적으로 몇 개 법률에 분산되어있거나,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법적 대응체계가 미비한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하여 스토킹 방지 특별법의 제정을 제안하였다. 선진 외국의 경우는 스토킹범죄의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자 이에대한 법적 체제를 완비했거나 구비중에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스토킹범죄의 입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호신적 방안으로는 먼저 개인호신 장비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경호서비스는 오늘날 민간 경호·경비업의 발달에 따라 날로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경호서비스 분야에서 스토킹범죄에 대비한 전문교육과 인력을 양성하여 스토킹범죄에 대한 경호서비스 기법을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다. 호신기법의 활용에 대해서는 호신용 무술과 다양한 기법을 소개함으로써 일반인들도 간단한 훈련만 받으면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범죄로부터의 위협도 국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중요한 기준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사회에서는 동적·사적인 자원을 총동원하여 이에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

參 考 文 獻

▣ 국내 문헌

1) 單行本 및 資料

- 국회사무처 법제 현안, 「스토킹에 대한 입법적 대응」, 법제처 법제1과, 성문인쇄사, 2000.
- 김병태의원 외 21인, 「스토킹처벌에 관한 특례법안」, 심의번호 1966, 국회, 1999.
- 김두현, 「경호학개론」, 서울: 정기출판사, 1996.
- 김영철, 「경찰대학 청담」, 서울: 대한문화사, 2000.
- 김택수, 「한국문화와 범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19회 형사정책세미나 자료, 1996.
- 대검찰청, 「신종범죄대책」, 검찰 21세기 연구기획단 연구자료 제5집, 광용기획, 1994.
- 박병식, 「스토킹, 그 예방과 대책」, 1999.
- 박철현 외, 「스토킹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00-24, 2000.
- 원호택, 「이상심리학」, 서울: 박문사, 1997.
- 이영재, 「‘범죄’이렇게 예방합시다」, 서울지방경찰청 방법기획과, 1997.
- 이시형 외, 「현대사회와 스토킹」,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 1998.
, 「스토킹방지법 제정을 위한 집담회」,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 1999.
, 「‘스토킹’ 애정결핍 또는 과잉보호가 낳은 망연」, 월간조선 215호, 1999.
- 이상철, 「경호방법론」, 서울: 홍경출판사, 1998.
, 「경호실무」, 서울: 홍경출판사, 2000.
- 이상철, 「판결전 조사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 이용표, 「스토커 이야기」, 서울: 명지사, 1999.
- 이원희 외, 「성희롱 예방에서 대처까지」, 서울: 화성사, 1999.
- 이원숙, 「성폭력과 사회복지」, 강남대학교출판부, 1998.
- 이윤근, 「사회안전관리론」,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98.
- 이중원, 「스토킹 I.Ⅱ」, 서울: 느낌, 1999.
- 장규원, 「‘새로운 사회문제’ 스토키와 그 대책」, 형사정책연구소식, 1998.
- 장명진, 「경호실무(총론)」, 서울: 법연출판사, 1996.
- 전대양, 「성적일탈과 성범죄에 관한 범죄 심리학적 고찰」, 형사정책연구, 1998.
- 전웅진, 「수사연구」, 1999. 12(통권 194호)
- 조중신, 성폭력 상담에 나타난 스토킹, 시민과 변호사 제64권, 1999.
- 조희진, 스토킹 방지법제정에 관한 법률적 측면, 시민과 변호사 제66권, 1999.

지광준, 「성범죄」, 강남대학교출판부, 1998.
 한중욱, 「스토킹 1」, 수사연구 194호, 1999.
 홍성열, 「범죄심리학」, 학지사, 2000.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에 관한 서울심포지엄'99」, 1999.
 한국성폭력상담소, 「계간. 나눔터」제27호, 199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이버범죄의 실태와 대책」, 제25회 형사정책세미나, 200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과 민간인 참여」, 성민기업, 1995.
 허운나, 「사이버성폭력의 실태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2000년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 No.2, 2000.

2) 論 文

김남성, 사회복지사 활용을 위한 치안서비스 향상 방안연구, 동국대 경찰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김선호, 1990년대 텔레비전 사회안전 관리양식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이상현, 사회발전에 따른 범죄현상의 특성과 그 대책에 관한 고찰, 동국대학교 논문집 제22권, 1983.
 이성은, 직장내 성희롱의 순응과 저항에 관한 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이오구, 서울지하철 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이재명, 항공기 사고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이창한, 스토킹범죄의 실태와 그 대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경찰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박경식, 새롭게 인식되는 범죄 행위, 경찰대논문집 제19권, 1999.
 박병식, 일본의 청소년성매매 정책과 프로그램 현황, 용인대학교 경찰행정대학원 논문집, 2001.
 박창석, 주거단지의 범죄예방공간 형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정동욱, 법정에 서는 스토킹, 경영법무 제58권, 1999.
 정 완, 스토킹범죄의 형사입법동향, 형사정책연구 제11권 제3호(통권 제43호), 2000.
 지광준, 성폭력범죄의 방제대책에 관한 고찰, 조선대학교 법학논총, 1997년 Interpol 발표, 1998.
 최찬목, 신변보호의 체계적인 예방작용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한순욱, 형사피해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외국문헌

- Allen, M.j., "Look Who's stalking : seeking a solution to the problem of stalking.",
web journal of current legal issue 4, url : newcastle.ac.uk/~nlawwww/1996/issue4.
- Giddens, A., 1993, Transformation of Sexuality.
- Jonston Ron (1997). How to Manage the Risk of Personnal Protection. in New York.
- Meloy J. Reid, The Psychology of Stalking(San Diego, California : Academic Press, 1998)
-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project to develop model anti-code for states",
washington, DC:US.Deparyment of justice, 1993.
- Office of Justice Programs, "Stalking and Domestic Violence", Washington, DC:US.
Deparyment of Justice, 1998.
- U.S CID(1978), Protective Security.
- 警察廳刑事局捜査第一課 監修, 警察廳性犯罪捜査研究會 編著, 性犯罪被害者對應ハンドブック, 立花書房, 1999.
- 警察廳 編, 日本「警察白書」, 1998
- 岩下久美子, 「人はなぜストーカーになるのか」, 小學館, 1997.
- 世紀末護身研究會, 「圖解 完全護身マニュアル」, 同文書院, 1995.

Ⅲ. 인터넷 사이트

- <http://www.ojp.usdoj.gov/ocpa/guides/domviol>
- <http://www.cwd.go.kr>
- <http://www.dial.co.kr/706/034/6.html>
- [http://www.cbpolice.go.kr\(사이버범죄 수사대\)](http://www.cbpolice.go.kr(사이버범죄 수사대))
- <http://www.cosses.co.kr/bb3.html>
- <http://www.kyungho.co.kr/~franel.htm>
- <http://www.bodyguard.co.kr/>
- <http://www.tamkyung.co.kr/>
- <http://www.changbo.co.kr/>
- <http://www.postech.ac.kr/~dasol/work/tk/main.html>
- <http://www.webpoint.co.kr/at~international/>
- <http://www.joeun.com/>
- <http://www.caps.co.kr/main.html>
- <http://www.sl.co.kr:2000>
- <http://www.scourt.go.kr>
- <http://www.nis.go.kr>

ABSTRACT

A Study on Security Methods Against Stalking Crime

by Sang-Chol Lee · Pyong-soo, Kim

This study would focus on actual conditions of stalking, which are getting more serious, and security methods. In current society, there has been rapid change in process towards the information society from the industrial society. This aspect of change has brought out the wide range of social and pathological situations. Moreover, it has produced a number of new types of crime, which can not be analysed by the values of traditional ethics and morals.

Currently, there have been the appearance of diverse types crime, however, the stalking can be regarded as a kind of new comer in the issue of contemporary crimes. The stalking has been focused on famous people and entertainers in the past, whereas more seriously, the range of victims has expanded to the general public in recent.

In particular, the stalking is closely connected with sexual harrassment. The most of the stalking have happened between men and women. Therefore, it can be mentioned that shadowing, trespassing, threatening, watching and concealment in the first would move on harrassment and even murder.

The stalking has been based on anonymity, following the information- oriented trend. Also, it shows its seriousness that the range of stalking victims has been expanded from limited people to the general public. Hence, all possible governmental and private resources need to be converged into the construction of social, legal and security methods for the protection and counterplan against the stalking.